

장기요양급여이용(제공) 변경 계약서

장기요양급여이용 변경 관련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변경 상세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안을 안내드리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래 내용으로 수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안내되는 본인부담율은 일반비율입니다. 본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개별적용됩니다				
서비스 변경 사유				
●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위와 같이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수급자, 대리인)

(인) 서명

